



강 남 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5년 4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교부

1. 사회복지과-2508(2015.1.20)호 및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6088(2015.4.1)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2015년 4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복지관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대상 : 강남장애인복지관의 4개소

나. 교부금액 : 금520,976,430원(금오억이천구십칠만육천사백삼십원)

다. 재원비율 : 시비90%, 구비10%

복지관명	2015년 예산액	기 교부액	4월 교부액			잔액
			계	시비	구비	
총계	7,913,460,000	2,308,081,000	520,976,430	468,878,780	52,097,650	5,084,402,570
강남장애인복지관	1,267,560,000	369,702,000	84,785,000	76,306,500	8,478,500	813,073,000
성모장애복지관	1,705,445,000	497,420,000	116,808,000	105,127,200	11,680,800	1,091,217,000
청음회관	1,549,445,000	451,920,000	91,848,130	82,663,310	9,184,820	1,005,676,870
총현복지관	1,796,075,000	523,852,000	126,529,000	113,876,100	12,652,900	1,145,694,000
하상장애인복지관	1,594,935,000	465,187,000	101,006,300	90,905,670	10,100,630	1,028,741,700

라.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마. 교부방법 : 장애인복지관 교부신청에 의해 계좌 입금조치

※ 사통망(행복 e-음)을 연계하여 e-호조로 지급

바. 정산방법 : 매월 사업 종료후 매분기후 집행예산 정산

사. 교부조건 : 2015년 보조금은 반드시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편성하며 인건비 전용은 불가, 인건비 잔액발생 시 정산 후 반납.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집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